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9-108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설치(안 제2조)

나. 출판문화진흥센터 주요사업 및 지원(안 제3조, 제4조)

다. 입주자 모집 및 비용의 부과·징수(안 제5조, 제6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안 제7조 ~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안 제10조 ~ 제12조)

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6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144조(공공시설)

2)「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결과 : 심의 불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이하 “출판문화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출판문화진흥센터의 명칭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요사업) 출판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출판문화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출판문화 창업(성장)에 필요한 컨설팅・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
3. 출판문화 창업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4. 국내외 출판문화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5. 출판문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활동 지원
6. 출판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모집 등) 출판문화진흥센터 내 시설 입주자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며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3.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판문화진흥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

3. 입주 승인, 입주기간 연장, 입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의 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2.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3.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변경 금지

5. 시설물 훼손 및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6.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조치의 이행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출판문화진흥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설치 등), 제4조(지원),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나. 수입발생 요인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판문화진흥센터 연도별 운영 소요예산 및 임대료 등 세입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20. 1. ~ 2024. 12.(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임대료	45,298	45,977	46,667	47,367	48,078	233,387
	관리비	70,467	71,524	72,597	73,686	74,791	363,065
	이용료	76,860	76,860	76,860	76,860	76,860	384,300
	사용료	22,800	34,200	38,000	38,000	38,000	171,000
	소계(a)	215,425	228,561	234,124	235,913	237,729	**1,151,752**
세출	인건비	256,247	260,091	263,992	267,952	271,971	1,320,253
	운영비	480,014	487,214	494,522	501,940	509,469	2,473,159
	시설관리비	263,727	267,683	271,698	275,774	279,910	1,358,792
	소계(b)	999,988	1,014,988	1,030,212	1,045,666	1,061,350	**5,152,204**
□ 총비용(b-a)		784,563	786,427	796,088	809,753	823,621	**4,000,45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등	784,563	786,427	796,088	809,753	823,621	4,000,452

-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등 다각적 노력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김은희
연 락 처	02-3153-837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관련

①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 제27조)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비용추계자료의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개별공시지가 : 3,448,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47,877원/㎡)

· 연간 임대료 산정산식 : 재산가액{건물가액{건물면적×건물시가표준액(㎡)}+부지가액{부지면적×개별공시지가(㎡)}} × 20/1,000(적용요율)

(※ 문화예술시설 적용요율 10/1,000 이상, 마포비즈니스센터 20/1,000 적용)

② 관리비는 개관 후 공공요금은 실비 정산 예정이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 추계시 공공요금 포함하였음

③ 이용료(워크플레이스 이용료)는 멤버십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아 연차별 추계는 진행하지 않았음

임대료 . 관리비 산출내역		
항목	산출 산식	금액
연간 임대료	월임대료(3,960원) × 면적(953.25㎡) × 12개월	45,298천원
연간 관리비	[{㎡ 당 월관리비(4,610원) + ㎡ 당 월공공요금(1,930원)} × 임대면적(953.25㎡) × 12개월] - [입주실 전용면적(210.47㎡) × 1,720원/㎡(월) × 12개월] ※ 입주실은 개별 관리에 따라 청소인건비 관리비에서 제외	70,467천원
워크플레이스 이용료	5,000원/일 × 61석 × 30일 × 70% × 12개월	76,860천원

※ 타기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분 적용 사례 거의 없음

④ 사용료 : 시설 대관료로 1차년도는 센터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획사업 및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하여 최소 사용료로 추정하고, 2차년도는 1차년도의 50% 상향, 3차년도부터 실질적 대관 비용 추정

※ 세입추계는 멤버십운영 및 실시설계시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출관련

① 1차년도 시설관리비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9년 연간 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 이후는 최근 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약1.5%)를 반영하여 추계함

② 1차년도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표 및 수당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 이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약1.5%)반영하여 추계함

③ 1차년도 운영비는 유사시설 ㎡당 평균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사업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구성은 75%:25%로 구성하였음. 2차년도 이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약1.5%)를 반영하여 추계함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비용 추계(안)

(단위 : 원)

예산항목(구분)	상세내역		소요예산
수지(A-B)			**784,563,000**
세입(A)	※ 멤버십운영 및 실시설계 시 면적 등 변경 등에 따라 추계 변동 가능		**215,425,400**
세출(B)			**999,988,400**
세입예산			**215,425,400**
부담금			192,625,400
임대료	3,960원/㎡		45,298,440
관리비	시설관리비의 면적 비례 부과 및 공공요금 포함(개관 후에는 실비 정산 예정)		70,466,960
워크플레이스 이용료	5,000원/일 × 61석 × 30일 × 70% ×12개월		76,860,000
사용료			22,800,000
다목적실	100,000원(일) × 30회		3,000,000
회의실	10,000원(2시간) × 30회 × 3실 × 12개월		10,800,000
편집실 등	5,000원(2시간) × 30회 × 5실 × 12개월		9,000,000
세출예산			**999,988,400**
인건비			256,247,400
기본급	1급(센터장)	2,947,200원×12개월×1명=35,366,400원	159,726,380
	2급(총괄매니저)	2,477,400원×12개월×1명=29,728,800원	
	3급(매니저)	2,279,300원×12개월×1명=27,351,600원	
	4급(대리)	1,871,400원×12개월×1명=22,456,800원	
	5급(직원)	1,614,300원×12개월×1명=19,371,600원	
	스테프	10,148원×209시간×12개월×1명=25,451,184원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20시간 × 1명 ×12개월	21,711,250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기타부양가족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자녀 100,000원	3,804,000
실비보상	직급보조비	{(165,000원 × 1명)+(155,000원 × 2명)+(145,000원 × 2명)}× 12개월	9,180,000
	명절상여금	기본급 × 60% ×2회	13,427,520
	정액급식비	130,000원 × 5명 × 12개월	7,800,000
	연가보상비	급여 × 86% × 1/30 ×3일	962,270
연금부담금 등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1,585,030
퇴직급여부담금	급여 × 1/12개월		18,050,950
사업운영비			357,214,000
보육프로그램			113,614,000
	입주기업선정 및 평가		12,393,000
	인큐베이팅프로그램 : 성공창업 멘토링, 창업전략 정기교육,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월간 네트워킹_투자, 데모데이 등		87,100,000
	성공창업 워크숍 등		14,121,000
출판지원 프로그램			183,600,000
	직접지원 : 입주기업 출판 제작지원, 입주기업 유통 제작지원, 입주기업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89,600,000
	간접 지원 :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 지원, 입주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 지원, 출판기념회 등 런칭 프로그램 지원,기업 간 협업프로젝트 지원		59,000,000
	심화문화 프로그램 : 출판문화 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기획 & 실행, 출판 크리에이터 네트워킹 데이, 지역 연계형 문화 프로그램 등		35,000,000
북&라운지 운영	팝업전시 및 북 큐레이션 6회 이상, 북&라운지 운영 진행비(12회 이상)		60,000,000
일반운영비			122,800,000
사무관리비 등	수탁사업운영경비, 시설 물품 유지 관리비, 사인물 등 제작 설치, 소모품 등		58,800,000
광고홍보비	마케팅용 콘텐츠 제작비 및 마케팅 채널 운영비, 홍보용 영상 제작비, 온라인 광고비, 오프라인 홍보물 등		64,000,000
시설관리비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63,727,000